

시 민

문서번호	장애인자립지원과-3613
결재일자	2016.2.29.
공개여부	비공개(5)
방침번호	

주무관	장애인자립정책팀장	장애인자립지원과장	복지기획관	복지본부장
협 조				



2016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(안)

2016. 2.

복 지 본 부
(장애인자립지원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하셨습니까? 예) 정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하셨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하셨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배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하셨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하셨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하셨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하셨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하셨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하셨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2016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운영계획

중증장애인에게 화재·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,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I 사업 개요

추진 배경

- 인공호흡기 분리,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
- 화재·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

사업 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24조(안전대책 강구)
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(활동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)

사업 목적

-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보호체계 마련

사업 내용

-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화재·가스감지센서, 응급호출기 등으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현장방문, 소방서출동 등 대응 조치하여 중증장애인 24시간 안전 확보

□ 추진 경위

- '13. 7월 : 마포구, 강서구 시범사업 시행
- '14. 1월 : 8개 자치구(종로, 성동, 도봉, 노원, 양천, 영등포, 강남, 송파) 추가로 총 10개 자치구 운영
- '16. 1월 : 6개 자치구(강북, 성북, 서초, 광진, 동대문, 용산) 추가로 총 16개 자치구 운영

II 2015년 추진실적

□ 2015년 추진실적

- 업무 실적
 - 장비 설치 : 총 780가구(8개구 설치, 2개구 미설치)
 - ※ 영등포구, 송파구는 장비문제로 미설치('16년 각 50가구 설치예정)
 - 업무 실적 : 총 2,821건(소방서 출동 74건, 지역센터 출동 2,366건, 자원발굴 연계 381건)

연 번	자치구	장비설치 (가구)	업무 실적			
			계	소방서 출동	지역센터 출동	자원발굴 연계
1	마포구	116	269	5	212	52
2	강서구	241	695	54	581	60
3	종로구	80	335	1	324	10
4	성동구	109	166	3	161	2
5	도봉구	60	481	1	439	41
6	노원구	75	11	5	5	1
7	양천구	48	453	1	249	203
8	영등포구	0	0	0	0	0
9	강남구	51	411	4	395	12
10	송파구	0	0	0	0	0
합계		780	2,821	74	2,366	381

○ 지원 실적

- 지원실적 : 총 2,821건

· 병원이송 : 73건

· 현장조치 및 장비점검 : 2,367건

· 자원발굴 연계 : 381건(서비스 홍보, 후원물품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)

(단위 : 건수)

연 번	자치구	지원 실적			
		계	병원이송	현장조치/장비점검	자원발굴 연계
1	마포구	269	7	210	52
2	강서구	695	52	583	60
3	종로구	335	0	325	10
4	성동구	166	3	161	2
5	도봉구	481	2	438	41
6	노원구	11	5	5	1
7	양천구	453	1	249	203
8	영등포구	0	0	0	0
9	강남구	411	3	396	12
10	송파구	0	0	0	0
합계		2,821	73	2,367	381

□ 문제점 및 개선대책

○ 문제점

- 불량 장비로 인한 오작동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문제

○ 개선대책

- '15. 6월 설치 장비 전수조사 시행 후 불량장비 수리 및 교체

- '15. 9월 가스차단기 등 추가로 장비 교체

- 월 1회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으로 장비 문제 최소화 추진

- 소방서 연동과 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 관리

Ⅲ 2016년 추진계획

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진계획

○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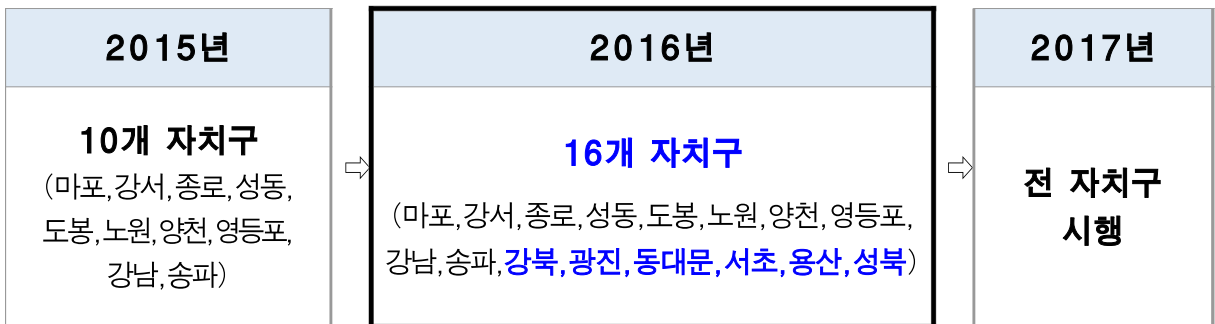
-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확대·강화하여 '17년에는 전 자치구 시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야간 순회방문서비스와의 병행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안전을 확보

〈'16년 달라지는 사항('15년 대비)〉

- 지원가구를 '15년 780가구에서 '16년 1,480가구로 700가구 추가
 - '15년 10개 자치구에서 '16년 16개로 6개구 추가 실시
- 서비스 제공 인력을 '15년 14명에서 '16년 27명으로 13명 추가
 - 응급관리요원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거점응급관리요원 1명 신설
 - '16년 신규 설치하는 6개구 지역센터에 응급관리요원 각 1명씩 배치
 - '15년 기존 응급관리요원이 1명이었던 지역센터에 1명씩 추가 배치

○ 사업예산 : 889,428천원 (국비(응급의료기금):시비=50:50)

○ 지원목표 : '15년 780가구 → '16년 1,480가구(700가구 증가)



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

- 1순위 : 활동지원 1등급 독거·취약가구 수급자 및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
 - 1 등급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인정조사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
 - 독거가구 : 실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
 - 취약가구 :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~3급 장애인,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만으로 구성된 경우
- 2순위 :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·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2등급 이하(인정점수 380점 미만)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
- 3순위 : 1·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(1~3급)

※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 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
 「24시간 활동지원」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받던 중 「24시간 활동지원」 받게 되는 경우택내 장비 철거

※ 대상자 선정 절차

구분	주체	내용
현황조사 사업대상자 추천	자치구,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	○ (지자체)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등급 독거·취약가구 우선 추출 ○ (활동지원기관)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한 가구 추천
↓		
대상자 발굴	지역센터, 동 주민센터	○ 현황조사 및 기관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하고 신청의향 확인
↓		
신청	본인 및 대리인	○ 신청서 제출
↓		
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	지역센터	○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○ 업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자치구에 승인 요청
↓		
승인	자치구	○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
↓		
서비스 제공	지역센터	○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

○ 서비스 내용

- 응급상황 자동감지장치 설치 및 장비 점검(지역센터)

-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,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**택내장비*** 설치

* 택내장비 : 게이트웨이(정보 송수신, 응급통화, 응급호출), 화재감지센서, 가스감지센서, 활동감지센서, 휴대용 응급호출기, 간이 소화용구 등

- 지역센터에서 택내장비 설치 후 정기·수시점검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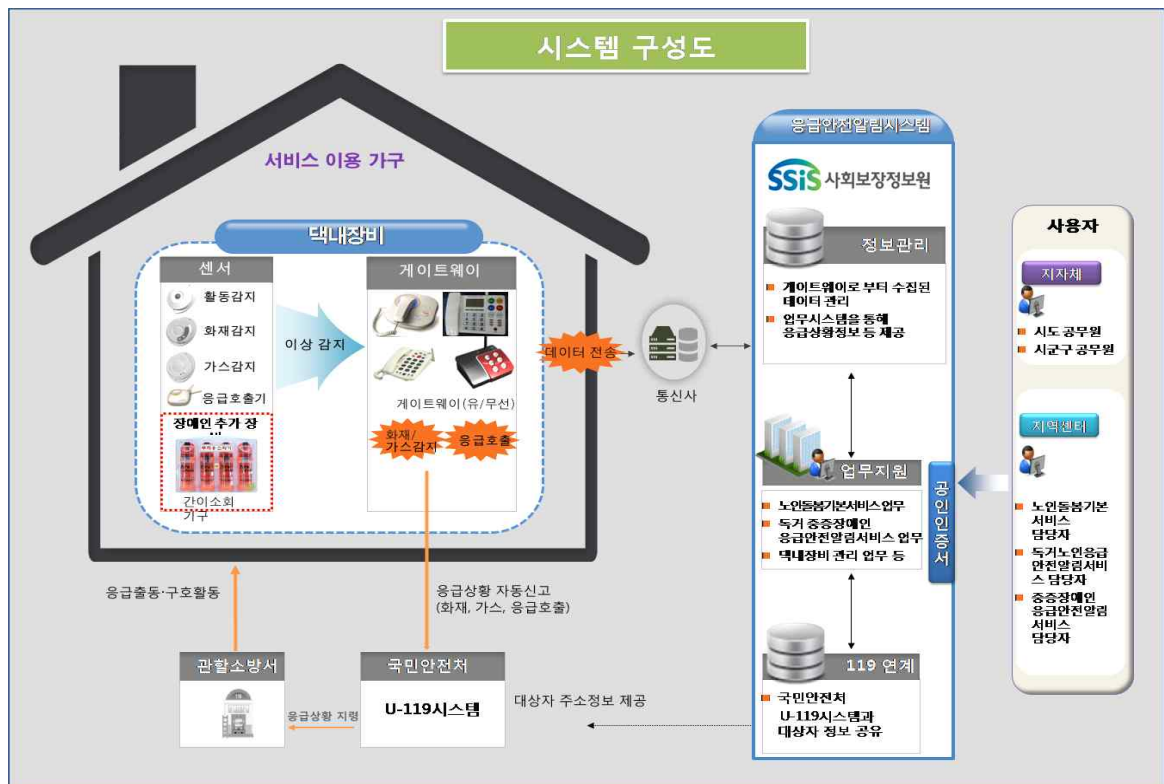
▶ **매월 1회 장비 전수점검 후 결과보고 (지역센터→자치구→시)**

- 응급상황 대응

-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및 U-119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역센터와 소방서에서 확인하고 소방서출동 등 대응 조치

-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

- 지역센터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가족, 이웃주민, 활동보조인,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



* 중증장애인 추가 장비 : 간이 소화기구, 가스차단기 등

○ 서비스 제공인력

- 인원 : 지역센터별 응급관리요원 1~2명
 - ※ 강남구 : 거점응급관리요원 1명 추가
- 역할
 - 거점응급관리요원(1명) :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 지원, 복무관리 지원, 기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 행정업무 지원
 - 응급관리요원(26명) :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, 댁내장비 설치·운영, 댁내 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, 정기 안전 점검 등
- 자격 :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댁내 장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아래 기준 권고
 -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전산·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
 -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
- 채용 : 전담인력을 자치구에서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선정한 후 근로계약(기간제근로자) 체결
 - ※ '15년 14명 → '16년 27명 채용(붙임1 참조)

○ 사업수행기관(지역센터) 지정

- 자치구에서 서비스 대상자 수, 지리적 접근성, 응급상황 대처능력 등 감안하여 일정 심사기준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(활동지원제공기관 등)으로 지역센터 지정(자치구별 1개)
- 센터별 보조금 지원 현황 : 49,416천원 ~ 77,016천원(붙임1 참조)
 - ※ 센터당 평균 59,293천원(인건비 38,880천원, 운영비 18,469천원)
- '16년 신규 6개소 확충(강북, 성북, 서초, 광진, 동대문, 용산)
 - ➡ '17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

2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지원

- 지원대상 :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구임에도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화재 취약가구를 자치구에서 선정 지원
 - ※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가구는 간이 소화기구 지원되므로 제외,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순위 적용하여 선정 가능
- 지원방법
 - 중증장애인 비율에 의거 25개 전 자치구에 예산 배정(붙임3 참조)
 - 자치구별 예산 내 대상가구 선정하여 스프레이식 소화기 등 구입·제공(가구당 1대)
 - ※ 지원가구 : 자치구별 150 ~ 825가구 설치 (1대당 2만원 기준)
 - 소화기 1대당 가격 : 15,000원 ~ 25,000원 정도(450g 기준)
- 사업예산 : 총 200,000천원 (시비 100%)

3 행정사항

- 협조사항
 - 사업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
 -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 적극 발굴
 - 맥내장비의 구매 및 준공처리 시 자치구 책임 하 검사·검수 철저
 - 맥내장비 설치상태, 장비작동 여부 등 정기 점검·관리 철저(월1회 가정방문)
- 추진일정
 - 사업안내 및 언론 홍보 : 3월
 - 지원가구 추천 및 신청 : 3~4월
 - 지원가구 결과보고(자치구→시) : 5월
 - 신규 6개구 장비 설치·운영 : 6월~
 - 장비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계획 이행 점검 및 보고(자치구→시) : 월별
 - 예산운영 등 사업전반 지도 및 점검(자치구→지역센터) : 분기별
 - 예산집행률, 장비점검 등 사업 관리현황 보고(시→보건복지부) : 분기별

*****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현황

연번	자치구	센터명	직원수 (’15년/’16년)	’16년 보조금(천원)
	계	16개	14 / 27	889,428
1	강서구	강서길라잡이장애인자립생활센터	2 / 2	61,104
2	마포구	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	2 / 2	59,784
3	양천구	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	1 / 2	54,384
4	도봉구	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	1 / 2	57,864
5	영등포구	해오름 장애인자립생활센터	1 / 2	56,964
6	성동구	(사)열린정보장애인협회 성동구지회	1 / 2	56,904
7	강남구	굿잡자립생활센터	2 / 3 *거점응급관리 요원 추가	77,016
8	노원구	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	2 / 2	59,664
9	종로구	(사)노들	1 / 2	55,284
10	송파구	방이복지관	1 / 2	53,964
11	강북구	미지정	0 / 1	49,416
12	성북구		0 / 1	49,416
13	서초구		0 / 1	49,416
14	광진구		0 / 1	49,416
15	동대문구		0 / 1	49,416
16	용산구		0 / 1	49,416

※ 지역센터(10개소) : IL센터(6), 사회복지관(1), 장애인복지관(1), 자활센터(1), 협회(1)

**** 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

상황	상황별 업무처리 절차 예시	비고
119 응급 버튼	<p>서비스 이용자(가정) 119 응급통화 버튼</p> <p>1. 119 응급통화</p> <p>2. 119 응급호출 - 전담관리자에게 - 핸드폰 문자메시지 - 전담관리자 pc 팝업</p> <p>3. <현장출동> 응급구조 화재진압</p> <p>4. 119 응급상황 확인</p> <p>5. 119 응급접수확인(유선)</p> <p>6. 환자이송시, 병원, 보호자 인계 확인</p> <p>소방서 1. 119 응급상황 접수 2. 응급구조</p> <p>지역센터 1. 소방서 상황 확인 2. 병원정보 3. 보호자 인계확인</p>	
화재, 가스 감지 센서 반응	<p>서비스 이용자(가정) 화재, 가스센서 반응 (40초 이상 반응시)</p> <p>1. 119 응급호출</p> <p>2. 119 응급호출 - 전담관리자에게 - 핸드폰 문자메시지 - 전담관리자 pc 팝업</p> <p>3. <유선확인후 현장출동> 응급구조 화재진압</p> <p>4. 화재, 가스센서 반응 (40초 이상 반응시)</p> <p>5. 119 응급접수확인(유선)</p> <p>6. 환자이송시, 병원, 보호자 인계 확인</p> <p>소방서 1. 화재, 가스센서 반응 접수 2. 응급구조</p> <p>지역센터 1. 소방서 상황 확인 2. 병원정보 3. 보호자 인계확인</p>	소방서는 응급호출사항 유선확인 후 출동
활동 미감지	<p>서비스 이용자(가정) 활동감지센서 반응시 (4시간이상 미활동시)</p> <p>1. 시스템으로 활동 미감지자 정보 전송</p> <p>2. 119 응급상황 확인 -1차 유선 -2차 방문</p> <p>3. 119 응급 상황 신고</p> <p>4. 119 응급구조</p> <p>소방서, 경찰서 1. 119 응급상황 접수 2. 119 응급구조</p> <p>지역센터 1. 119 응급상황 확인 2. 119, 경찰서 신고 3. 보호자 인계확인</p>	① 미반응자 시스템 확인 ② 유선, 방문확인 ③ 소방서, 경찰서 신고 ④ 보호자 연락

**** 자치구별 소화기 예산 및 지원가구

자치구	수급권자(명)	비율(%)	금액(천원)	지원가구(예상)
계	81,727	100%	200,000	10,000
종로구	1,224	1.5%	3,000	150
중구	1,190	1.5%	3,000	150
용산구	1,605	2.0%	4,000	200
성동구	2,119	2.6%	5,200	260
광진구	2,373	2.9%	5,900	295
동대문구	2,886	3.5%	7,100	355
중랑구	3,919	4.8%	9,600	480
성북구	3,412	4.2%	8,400	420
강북구	3,620	4.4%	8,900	445
도봉구	3,055	3.7%	7,500	375
노원구	7,011	8.6%	16,500	825
은평구	4,669	5.7%	11,500	575
서대문구	2,446	3.0%	6,000	300
마포구	2,954	3.6%	7,300	365
양천구	3,286	4.0%	8,100	405
강서구	6,913	8.5%	16,400	820
구로구	3,292	4.0%	8,100	405
금천구	2,032	2.5%	5,000	250
영등포구	2,631	3.2%	6,500	325
동작구	3,001	3.7%	7,400	370
관악구	3,845	4.7%	9,500	475
서초구	2,406	2.9%	5,900	295
강남구	4,046	5.0%	10,000	500
송파구	4,152	5.1%	10,200	510
강동구	3,640	4.5%	9,000	450

※ 각 자치구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('15.12월) 비율에 따라 예산 배분

※ 소화기 1대당 2만원 기준으로 지원가구 계산. 끝.